

-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.
-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“내연금(<http://csa.nps.or.kr>)” 또는 “국번없이 ☎ 1355 (유료)”로 확인하세요.

① '21.7.1. 연도 중 중간 입사자의 근무기간을 '21.1.1.~12.31.로 신고

- 총급여 1,000만원이며, 총 근무일수가 184일인 근로자
- ▶ 적정 기준소득월액 : 1,630,000원 (10,000,000원 ÷ 184일 × 30)
- ▶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: 821,000원 (10,000,000원 ÷ 365일 × 30)

❑ 근무시작일을 입사일자(7.1.)로 신고

② '21년 12월 급여를 '22년 1월 지급 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

- '21.11.1. 입사하여 11월 급여(100만원), '21년 12월 지급, 12월 급여(100만원), '22년 1월 지급 발생
- ▶ 적정 기준소득월액 : 983,000원 (2,000,000원 ÷ 61일 × 30)
- ▶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: 491,000원 (1,000,000원 ÷ 61일 × 30)

❑ '21년 12월분 급여를 소득총액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

③ 휴직기간 미반영 : 휴직을 하였으나, 납부예외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
- '21.1.1. 입사, 총급여 2,000만원이며, 90일간 산전 후 휴가였으나 납부예외의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일부(100만원) 발생
- ▶ 적정 기준소득월액 : 2,072,000원 (19,000,000원 ÷ 275일 × 30)
- ▶ 착오 결정 기준소득월액 : 1,643,000원 (20,000,000원 ÷ 365일 × 30)

❑ 소득총액에서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제외하고, 실제 휴직일수(90일)를 신고

④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(현)과 종(전)으로 분리 신고하고,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다른 기준으로 신고

- 주(현) 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으로, 주(현) 근무기간은 1년으로 신고 ⇨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됨

❑ 근무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총액이 일치되도록 신고

⑤ 실제 휴직일수에 휴일(주말, 공휴일)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

- 소득총액 신고서 실제 휴직일수란에 휴일(주말, 공휴일)을 포함하여 신고 ⇨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됨

❑ 사업장에서 재직하지 않은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

과세자료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?

-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**소득총액 신고를 생략**하며 공단이 과세자료를 입수·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 후 통지합니다.
(단,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.)
- 기준소득월액(천원 미만 절사)
 - ▶ 2021년 소득총액 ÷ 2021년 근무일수(근무기간 - 휴직일수) × 30
- 사업장에서는 **6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**하시고, **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**하시면 됩니다.
- 공단은 6월초부터 홈페이지 및 EDI를 통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용을 사전 안내합니다.

취득·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?

- 2021.12.1.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 여백에 추가 기재 후 「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」를 함께 제출하고, 신고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로 그은 후 여백에 “상실”이라 기재 후 「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」를 함께 제출

인턴(비정규직)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소득총액 신고방법은?

- ① 입사당시부터 인턴(시보)기간이 정해져 있고, 일정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
 - ▶ 전체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총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
- ② 인턴기간 후,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(사전 예측불가)
 - ▶ 근로계약 변경 이후의 근무기간 및 동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

예시

'21.1.1. 입사, 3개월 인턴(총 급여 300만원), 4월부터 정규직(총 급여 1,800만원)

- ▶ ①의 적정 신고 기준소득월액 : 1,726,000원 (21,000,000원 ÷ 365일 × 30)
- ▶ ②의 적정 신고 기준소득월액 : 1,963,000원 (18,000,000원 ÷ 275일 × 30)

※ 공단에서는 전년도 취득(납부재개)자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신고 소득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소급 정정하오니, 취득(납부재개)자의 소득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으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소득총액 신고대상(5유형)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

- 소득총액신고서에 실제 휴직일수를 기재하고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.
- ※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
소득총액 미신고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?

-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21년도 전체 가입자(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)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(3.3%)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.

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나요?

-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5,530,000원, 하한액 350,000원이며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은 매년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. (매년 3월 고시, 7월부터 적용)
- ※ A값 :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 (물가상승 반영)

연봉제 시행으로 개인별 소득이 공개되면 안되는데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(6월 발송)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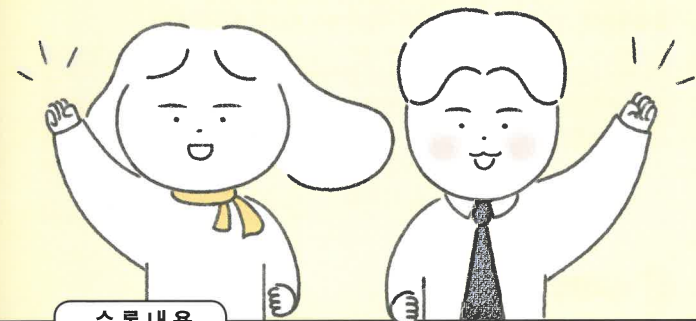
- 국민연금 웹EDI 서비스 가입(<http://edi.nps.or.kr>) 후 신고서 작성 → 연금고유신고서 → ⑥소득총액 신고서 화면에서 “우편발송 제외 신청”을 하시면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가 **EDI로만 발송**됩니다.



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
‘내 곁에 국민연금’ 모바일 앱!

www.nps.or.kr ☎ 1355(유포)

2021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



수 록 내 용

1. 소득총액 신고란?
2. 소득총액 신고방법
3.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
4.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
5.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
6. 대표적인 착오 신고 사례 및 올바른 신고방법
7. 소득총액 신고 Q&A